

비공개 대상 공단행정정보 세부기준표

《정보공개법 제9조 (비공개대상 정보) 제1항 각호》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비공개대상 행정정보 세부기준

구 분	업 무
공 통	공직자 윤리법 제14조 및 제14조의 3의 규정에 의한 재산등록사항, 금융거래자료, 다만, 당해 법률에 의하여 공개하도록 규정된 사항은 제외한다.
	형사소송법 제47조에 의하여 공판개장 전 소송에 관한서류
	통계법 33조의 규정에 의한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또는 법령 등의 비밀에 속하는 기초자료
	국세기본법 제81조의10 규정에 의하여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 국세의 부과 또는 징수목적으로 취득한 정보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의하여 민원사무 처리와 관련하여 민원인의 권익이 침해되는 정보
	그 밖에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비밀 또는 비공개하도록 규정된 정보(“법률에 의한 명령”은 내부지침·예규·훈령·지시 등 “비법규 사항”을 제외함)

2.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해당사항 없음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비공개대상 행정정보 세부기준

구 분	업 무
공 통	인감업무·주민등록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위·변조, 범죄목적사용 등으로 인하여 공공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방재, 방법에 방해가 되는 정보
	사람의 생명·생활·지위 등이 위협받는 정보

4.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비공개대상 행정정보 세부기준

구 분	업 무
공 통	행정소송·헌법소원 등 재판과 관련된 소장, 답변서, 소송 진행상황 등에 관한 정보
	진행 중인 재판과 직접·구체적으로 관련되는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협성이 있는 정보
	임직원 등의 범죄사건 관련 진정, 내사 사건 처리 관련사항

5.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 검토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비공개대상 행정정보 세부기준

구 분	업 무
공 통	직원임용시험에 관한 사항으로 출제위원 및 면접위원 명단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불시감사·점검 계획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감사 등의 결과 및 결과에 따른 조치요구사항
	공단 내부적으로 검토과정중인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성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정보 1. 법령·지침·규정 등 제·개정과 주요 정책결정 사항으로써 관계기관의 협의 등 진행 중인 사항 2. 기관의 직제 개정 검토 중인 사항
	인사위원회, 정보공개심의회 등 정책결정 관련 회의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 1. 회의의 내용이 대부분 개인의 신상, 재상 등 사생활의 비밀과 관련되어 있는 정보 2. 회의의 내용이 공개로 인하여 외부의 부당한 압력 등 업무의 공정한 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3. 참석자의 심리적 부담으로 인하여 솔직하고 자유로운 의사교환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직원 등의 임면, 복무, 급여, 연수 등의 인사에 관한 개인정보
	직원의 근무성적평가에 관한 정보
	인사위원회 회의록 등 심사내용
	기타 임직원 인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내부 검토, 협의, 결정 등 공개될 경우 내부 인사기밀이 노출되거나,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한 인사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입찰관련 입찰예정자의 경영·업무·평가결과를 기재한 사항
입찰참가신청서, 첨부서류, 유자격자 명부	
입찰예정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단가, 계약완료 전에 입찰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등 공정한 계약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6.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단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의 단서에 해당되는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 비공개대상 행정정보 세부기준

구 분	업 무
공 통	<p>개인신상정보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개인 사생활의 침해우려가 있는 정보</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이름,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등 2. 개인 명예를 손상시킬 수 있는 사항 3. 건강진단표 4. 범죄사실조회 및 결과 5. 개인 신상정보를 삭제해도 해당 개인을 인식할 수 있는 사항 <p>단, 필요 시 예외적으로 문서전체 비공개 가능</p>
	<p>진정·탄원·질의 등 각종 민원을 제기한 개인 등의 인적사항, 이 경우 민원내용 또는 처리결과의 공개만으로 당해 민원인의 식별이 가능한 경우 그 민원내용과 민원인이 비공개를 요청한 민원 등을 포함한다. 다만, 민원인이 본인의 인적사항이나 민원내용 등의 공개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p>
	<p>특정 임직원의 집 주소, 전화번호, 학력, 주민등록번호, 사회경력 등 공적업무수행과 관련이 없는 정보. 단, 특정 임직원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p>
	<p>인사기록카드, 채용후보자 명부, 교육훈련관리, 징계심의·의결·결정통지, 신원조회, 퇴직사실 확인, 유공자 포상 등 인사관리과정에서 생산·취득한 임직원의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임직원의 명예·신용·경제적 이익 등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 단, 특정 임직원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p>
	<p>시험원서·답안지 등에 포함되어 있는 수험생의 성적·학력·주소 등 개인정보</p>
	<p>그밖에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개인정보의 공개 여부에 대해 규정된 경우 그 법령에 따른다.</p>

7.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비공개대상 행정정보 세부기준

구 분	업 무
공 통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하“법인 등”이라 한다)의 경영영업에 관한 정보 1. 법인 등 사업자 등록번호, 계좌번호 등 2. 법인 등 신상정보를 삭제해도 해당 법인 등을 인식할 수 있는 사항 3. 공개 시 저작권 도용 또는 분쟁 야기 가능성이 높은 사항
	국가보조금 지원을 받는 민간단체 또는 정부가 허가한 비영리 사단법인 관련사항 중 그 단체의 자금·인사 등 내부관리에 관한 정보
	각종 용역수행 제안업체가 제출한 사항으로서 당해 업체의 기존기술·신공법·시공실적 내부관리 등에 관한 정보
	각종 용역수행 제안업체에 대한 기술평가 결과 등 특정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8.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비공개대상 행정정보 세부기준

구 분	업 무
공 통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관련하여 수집된 부동산 관련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공유재산 매각공고 전의 관련 정보
	용지매수계약서, 설계단가표, 각종 개발계획 등 관련 정보